

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‘산재보상 대리인’ 지원 법제화
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-

- 취약계층 산재 피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·재심사 등 불복 절차까지 무료 법률 조력 제도 도입

오늘(9월 3일)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.

동 개정안을 통해 산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,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, 공인노무사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.

이로써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도 산재 보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 개정 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.

김영훈 장관은 “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그간 경제적·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총괄	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	책임자	과장	임희종 (044-202-7064)
		담당자	사무관	김수명 (044-202-7073)
담당 부서	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	책임자	과장	곽철홍 (044-202-8830)
		담당자	사무관	신지원 (044-202-8846)